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44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신정훈
윤준병·김교홍·박수현
이원택·강득구·이병진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

치·운영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전출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금의 전출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 음)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 <u>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 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 률</u> 」 제34조에 따른 임업·산 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전출 금
<u>8. · 9.</u> (생 략)	<u>9. · 10.</u>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